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성주군수

2. 개정이유

○ 최근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 불편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군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명시(안 제5조제3항 신설)

-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

4.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표준안

5. 검토의견

☐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 본 조례안의 개정배경은

○ 최근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복무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 불편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과)에서는

-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를 근거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명시”를 내용으로 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표준안」**을 마련하여 2008년 9월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습니다.

○ 따라서 우리군 에서도 이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라는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명시를 신설(안 제5조제3항) 내용으로 한 성주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개정하였고

○ 신·구 조문 대비표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의 제반규정에 적합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성주군수

2. 개정이유

○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월항 보건지소의 이전·신축에 따른 주소지 변경으로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월항보건지소 주소 변경

- 당 초 : 성주군 월항면 안포리 39-3번지
- **변 경 : 성주군 월항면 안포리 1366번지**

4.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검토의견

□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 본 개정 조례안은

○ 보건복지가족부의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노후화된 월항 보건지소의 이전·신축에 따라 주소지가 변경**됨에 따라「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적으로

○ 본 개정 조례안은 신·구 조문 대비표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의 제반규정에 적합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성주군수

2. 개정이유

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가 개정(대통령령 제20900호, 2008. 07. 03. 공포・시행)되어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던 것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자율권과 탄력성을 확대하는 한편,

나. 지나치게 세분화 된 직급 구분으로 신규 수요에 탄력적인 대응이 곤란하여 총정원과 기구와 관련 있는 상위직 정원(5급 이상)만 조례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 539명

- 집행기관의 정원 : 527명
- 의회기관의 정원 : 12명

나. 성주군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비율

- 일반직 : 현행 80% 이상 → 현행과 같음
- 기능직・고용직 : 현행 18% 이내 → **조정 17% 이내(△1%)**
- 별정직・정무직 : 현행 2% 이내 → **조정 3% 이내(증1%)**

다. 성주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

○ 일반직 비율

- 4급 이상 현행 1% 이내 → 현행과 같음
- 5급 현행 6% 이내 → 현행과 같음
- 6급 현행 27% 이내 → **조정 28% 이내(증 1%)**
- 7급 현행 31% 이내 → 현행과 같음
- 8급 현행 24% 이내 → **조정 23.5% 이내(△0.5%)**
- 9급 현행 11% 이상 → **조정 10.5% 이상(△0.5%)**

○ **기능직・연구직・지도직 비율** → 현행과 같음

○ **별정직 비율**

- 5급 상당 현행 7% 이내 → **조정 3% 이내(△ 4%)**
- 6급 상당 현행 50% 이내 → **조정 64% 이내(증14%)**
- 7급 상당 현행 29% 이내 → **조정 27% 이내(△ 2%)**
- 8급 상당 현행 12% 이내 → **조정 3% 이내(△ 9%)**
- 9급 상당 현행 2% 이상 → **조정 3% 이상(증 1%)**

라. 별정・기능직 정원 조정

○ 별정직(전체) : 현행 17명 → **조정 18명(증1)**

- 의회사무과 → **별정6급 1명(증1)**

○ 기능직(전체) : 현행 74명 → **조정 73명(△1)**

- 의회사무과 → **기능직 1명(△1)**

4.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검토의견

□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만들어 효율적인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종전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했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2008. 7. 3 대통령령 제20900호)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자율권과 탄력성을 확대하고

○ 또한 5급 이상의 상위직급을 책정할 경우에는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던 것을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의 조직 협의권을 시・도지사로 이양하였습니다.

□ **따라서 우리군 에서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명시하고,

○ 상위법령 개정의 취지에 맞게 정원관리와 직급책정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 한 것으로

○ 특히, 우리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담당(6급)정원을 증원**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주요내용은**

○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과 총 정원 및 기구와 관련 있는 상위직 정원(5급 이상)만 조례로 정하며,

○ 또한 6급이하 직급별 정원도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 우리군의 공무원 정원 총수, 종류별 정원책정 비율, 직급별 정원 책정 비율, 별정・기능직 정원조정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구분

■ **경력직공무원** :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

① **일반직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② **특정직공무원** : 공립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③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 **특수경력직공무원** :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

① **정무직공무원**

-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② **별정직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③ **계약직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

④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결론적으로**

○ 2007년부터 총액 인건비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정원책정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정원관리와 직급책정에 대한 자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의 제반규정에 적합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